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샘물등의 개발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등〉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3
1. 샘플등의 개발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3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의 소관기관 변경	6
3.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기관 변경 등	9
4. 부칙	1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9일 송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함.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때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4 등).

Ⅲ. 검토의견

1. 샘플등의 개발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개정안은 샘플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 개발임시 허가 시 시·도지사가 대상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u> ----- ----- ----- ----- ----- ----- ----- ----- ----- -----
<신 설>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플보전구역 지정·변경
<신 설>	2. 제9조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생략)	<u>3. 제10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u> <u>임시 허가</u> ② (현행과 같음)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4¹⁾는 샘물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대상지역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샘물등의 개발 과정에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청구로 생수공장 설립 임시 허가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샘물등 개발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²⁾되고 있음.

개정안은 샘물등의 개발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시에도 시·도지사의 주민등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MTN 뉴스, 원주 신림 송계리, 콜마 BNH 생수 개발 논란, 2024.3.20

첫째, 현행법 제8조의4는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 임시 허가 등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경우 각각 별도의 조항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임시허가 외에 일반적인 개발허가 시에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중복·과도한 규제일 수 있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1일 취수 허가량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³⁾이 있었으나,

임시허가는 환경영향조사 작성을 위한 가허가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본허가(허가량, 허가조건 등을 설정) 시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주민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경상남도 및 (사)한국샘물협회의 의견임.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의 소관기관 변경

개정안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소관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u>시·도지사</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 ----- ----- <u>환경부장관</u> ----- ----- ----- -----.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u> 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u>환경부장관</u> 은-----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4) 및 제17조제1항5)은 먹는샘물 허가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6)의 등록7) 및 취소기관을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수 생산과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자동계측시설 미작동, 대장균 검출 등 먹는샘물에 대한 불신이 제기8)되고 있음.

-
- 4) 「먹는물관리법」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5) 「먹는물관리법」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 6)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고 조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
- 7)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3인, 기사 3인 등 기술인력 6인이 필요하고, 지구물리 탐사장비, 시험공 굴착장비, 측정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8) 환경경영신문, ‘불안한 생수 대장균, 탁소, 비소, 우라늄, 브로산염 검출... 먹는샘물 관리방안 제도혁신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자’, 2024.7.27

개정안은 먹는샘물 허가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기관을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먹는샘물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해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은 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지자체에서 행
사할 재량사항이 없고,

등록처를 변경하는 것으로는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 해소라는
목표 달성이 곤란하여 개정 실익이 없고 먹는샘물 등의 개발허가, 영
업자 지도·점검 인력을 보유한 시·도지사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임.

[2024년 기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등록 현황]

(단위: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	7	-	-	-	-	-	1	-	5	-	-	-	-	-	-	-	1

자료: 환경부

3.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기관 변경 등

개정안은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환경영향심사 기관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여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조사서와 기술적 심사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u>환경부장관에게</u>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 ----- -----「 <u>한국수자원공사법</u> 」에 따른 <u>한국수자원공사에</u> ----- -----.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신 설></u>	<삭 제> ③ <u>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와 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적 심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u>

현행	개정안
	<u>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먹는물관리법」 제13조⁹⁾에서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의 개발업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¹⁰⁾에서 개정안은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심사기관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조사서와 기술적 심사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

9) 「먹는물관리법」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 감사원의 먹는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2022년 9월 14일) 유력환경청은 수질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적정성 지도 및 점검을 소홀히 했고, 40개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중 5개 기관이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 필요가 있음.

첫째, 환경부는 해당지역, 관련기관 등의 이권개입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단일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심사하는 것보다 공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 및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¹¹⁾하였음.

둘째,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2항¹²⁾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는 환경부 및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이므로 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참고로, 환경부는 현재 환경영향조사서 작성내용, 절차 등을 개선 중에 있고,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지침」을 2025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임.

12) 「먹는물관리법」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부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환경영향심사 기관의 조사서 심사는 법 개정 이후의 조사서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안 시행일의 경우 샘플등 개발 임시허가 시 주민 의견청취 의

무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기관의 변경,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등을 위한 행정 조치 및 시행령 준비 작업에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칙안 제2조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조의 조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본문의 수정사항(대행자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및 조사서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라 부칙 조문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